제정 2013. 9.30 조례 제2496호

일부개정 2016. 1. 6 조례 제2704호

일부개정 2019. 10. 28 조례 제3122호(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 정비 조례)

일부개정 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(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)

일부개정 2020. 11. 13 조례 제3256호(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양시 주민자치의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제시하고, 주민과 행정의 역할과 책임,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공동체를 형성함에 있 어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마을"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, 문화, 경제, 환경 등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.
- 2. "주민"이란 안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거나,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마을공동체"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하다.
- 4. "마을공동체 만들기"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경제, 교육, 문화, 복지,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.
- 5. "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"이란 시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이념) ① 주민자치의 주체는 주민으로 한다.

② 시는 주민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고,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한다.

- ③ 주민과 시는 상호 협력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한다.
- 제4조(기본원칙)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 야 하다.
 - 1. 모든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간의 관계형 성을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.
 - 2. 주민 참여와 주도하에 자발적 학습과 토론,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.
 - 3. 주민자치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행정과 상호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추진한다.
 - 4.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미래 세대와 공존을 지향한다.
- 제5조(주민의 권리와 책무)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.
 - ② 주민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장의 책무) 안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 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

- 제7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현황과 과제
 - 2.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
 - 3.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
 - 4.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

(추 1)
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준용한다.
- 제8조(시행계획)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 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
 - 2. 사업에 대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
 - 3.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전담부서 설치)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 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전담부서는 사업을 연계 · 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교육지원)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주민참여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사업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>
 - 1. 마을공동체 만들기 교육 및 워크숍
 - 2. 환경·경관 보전 및 개선
 - 3.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
 - 4. 마을기업 육성
 - 5.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
 - 6.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
 - 7.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・조사
 - 8. 공간 나눔 장려 및 지원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. <신설 2016. 1. 6>
 - 1. 종교활동

- 2. 정치활동
- 3. 영리목적
- ③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주민 10명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1. 6>
- ④ 추진단은 자체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 단장을 둔다. <개정 2016. 1. 6>
- ⑤ 추진단의 명칭이나 구성,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. 6>
- ⑥ 추진단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추진 단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>
- 제11조의2(준용)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6. 1. 6]

- 제12조(지원신청 등)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전문가 지원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공 동체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문가를 지원하 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.
 - 1.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 - 2.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 실현을 위하여 자주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
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4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단장이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·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추진단의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

(추 1) - 668 -

- 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제15조(지원금 회수 등)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해야 하고, 지원받은 금액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1. 사업비를 지원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
 - 4. 지원대상 사업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
 - 5.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
- 제16조(형성재산의 사용)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 다만, 매매·양도·교환·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제17조(평가·포상)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·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·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9. 11. 15>

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<개정 2016. 1. 6>

제19조(설치)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 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6. 1. 6>

- ② 위원회의 기능은 「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1. 6, 개정 2020. 11. 13>
- 제20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사업의 지원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의 공모·선정 및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사업의 분석·평가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목개정 2016. 1. 6]

- 제21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 내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(性)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당연직위원: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관련 국(소・원)장
 - 2. 위촉직 위원
 - 가. 주민대표, 시민단체, 유관기관, 마을공동체 만들기 경험이 있는 사람
 - 나.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활동가 및 전문가
 - 다.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 - ④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총괄 전담 부서장으로 한다.
- 제22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. <단서삭제 2019. 10. 28>
 -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2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4조(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

- 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-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-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위촉해제)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 - 2.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위원이 제2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 성을 해친 경우
 - 4.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2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2 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1.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 -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위원의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- ④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관, 회의결과 정리·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지원센터 <신설 2016. 1. 6>

제28조(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

- 다. <개정 2016. 1. 6>
- ② 삭제 <2020. 11. 13>
- ③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6. 1. 6>
- 1.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2. 마을공동체의 기초조사, 사업 분석 · 평가 · 연구
- 3.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 · 실행 지원
- 4.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- 5.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- 6.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·홍보·전파
- 7. 마을공동체 자원관리
- 8.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제목개정 2016. 1. 6]

제5장 보칙 <신설 2016. 1. 6>

제29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. 6 조례 제270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10. 28 조례 제3122호,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2019. 11. 15 조례 제3145호,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>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④ 「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 중 "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"를 "안양시 사무의 민 간위탁 조례"로 한다.

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20. 11. 13 조례 제3256호,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「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"를 "「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"로 "도시재생위원회"를 "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"로 한다.

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② 생략